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06 발의연월일: 2021. 8. 4.

발 의 자: 송재호·김민철·김승남

김영배 · 김한정 · 민형배

소병훈 · 오영훈 · 윤관석

이성만 · 정청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"강제적 셧다운제"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러나, 대회에 참여하거나 e스포츠 계약서를 통해 등록한 프로게이 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	제26조(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
제공시간 제한) ① 인터넷게임	제공시간 제한) ①
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	
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	
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	
는 아니 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「이스포츠</u>
	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
	<u> 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</u>
	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
	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
	러하지 아니하다.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